

# 기안용지

출발계호 문자번호	공업 1331	(전화번호 75-7649)	건설규정 건설사항
처리기간	시 3일		
신청일자	78.9.15		
보존년한	3년		
부서	공업과장	건설과장	심사필
기안책임자	김정환	공제우	
간수 신조	취안준	시강	
제목	통관검사결과 불합격상품 수입 및 파기영령(제분)		
제1안	<내 부 별 채> 1. 공진청 화관 1331-8572(78.9.15) 및 화관 1331-8375(78.9.6) 호와 관련입니다. 2. 사후검사 품목에 대하여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6조 규정이 의거 불수 수입 및 파기 영령(제분) 하고 3. 통관검사 상품에 대하여는 해당규정에 응보하여		
공산품 품질 관리법이 의거 조치 의무 보안과 같이 시행코자	[Red circular stamp with signature]		
제2안	수신 : 공업진흥청 참조 : 화관 1331-8572 계동 : 등 관		
1. 취청 화관 1331-8572(78.9.15) 및 화관 1331-	[Red circular stamp with signature]		

8375(28.9.6)호와 관련임이다.

2. 당시 관비 수취검사 품목 불합격 상품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유선품 품질 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거 및 파기 명령(처분) 하였기 통보 합니다.

아		래	
회사명	대표자	소재지	주요내용
오동화유지공업사	김우주	영등포구 영등동 46-25	수거파기 명령
비들유지공업사	김병하	성동구 성동동 2가 379-1	수거 및 파기 명령
무궁화유지공업사	유한성	동대문구 전자동 1-82	수거 및 파기 명령

제 3 안

제출일시 1978. 9. 20	1336
합동주	
5	전결

공 고 (안)

경주별시 공고제 도

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상품 수거 및 파기 명령(처분) 공고  
 유선품 품질 관리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상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거 및 파기 명령(처분)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공고한다.

1978. 9.  
 서울 특별시 강

1. 처분 대상 상품.

업체명	소재지	품명	규격	불합격 항목
오동화유지공업사	영등포구 영등동 46-25	2형생략바	선종 I 4호	선종분, 유리알까지 결함, 광물불순물, 중량
비들유지공업사	성동구 성동동 2가 379-1	2형생략 비우	선종 II 4호	선종분, 유리알, 결함 광물불순물, 중량불순물
무궁화유지공업사	동대문구 전자동 1-82	"	선종 I 4호	선종분, 유리알, 결함 광물불순물, 중량

2. 처분내용: 수거및파기명령 (처분)

3. 수거및파기기간: 78. 9. 23. ~ 78. 10. 22

4. 처분사유: 원상복구품질검사 기준미달

제 4 안

수신: 분화음보음판 (502)

제목: 시보 게재 의뢰

서울특별시 응고 제 호 응 응우 하의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서울특별시 응고 제 호 1부 등

제 5 안

수신: 지구 환경

제목: 순환 공장

제목: 하위도시 상품 제조업체 조치

- 1. 응고 제 환 1231-8375(78. 9. 6) 및 환 1231-8572 (78. 9. 15) 호로 당시에 하위도시 상품 제조업체가 통보되어
  - 2. 해당 공장 구획에 불합치나 공산품 불검출의 병에
- 취사 조치 함

업체명	대포사	소재지	비고
안광복장	안광진	경남 함안군 2동가 108-101	취사 완료
지본양행	김병삼	경남 함안 1읍 4-105	"
광진복장	김무경	" 4-123	"
서울복장	김복홍	" 가 93-94	"
원성서어즈	구한조	" 4-130-131	"

첨부: 서울특별시 사보 1부 등

제 6 안

수신 도시가드 과장 (507)

제목 사후검사상품단속결과

1. 음진청 화관 1331-8375 (78.9.6) 및 음진1331-441 (78.9.13) 호, 화관 1331-8572 (78.9.15) 호와 관련입니다.

2. 당과에서 이체한 유류품질검사 결과중 불합격 업체에 대한 소제지를 증보 합니다.

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비고
신용상주유소	이정길	용산구한암로2161-1	이의신청증인

제 7 안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사후검사상품품질검사결과 조치

1. 기업체의 다음 상품은 음산품품질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명되어

2. 별첨과 같이 수기 및 다기 명명(처분) 하니 귀문 사항을 이행하시고 당시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.

(한계 증액 기준 준수 기에 귀기 사항)  
제 3 안

첨부: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상품 수기 및 다기 명명(처분) 등

수신처: 2종유지, 비등유지, 무공화유지.

제 8 안

수신 수신처 참조 (산정과장)

제목 동건

1. 음산품 품질 관리법 제6조 제3항 위 규정의 의거

파기보수기 명검란 별첨 영제에 대하여 수기 및 파기  
사항을 확인 조사 보고 할 것.

첨부: 서울 특별시공고 제 호 기부.

수신처 영등포구 성동구 등대동.

1062